

2025년 제4회 예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5년 제4회 예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7일

예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

I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근무부서	채용등급	인원	비고
합계			1명	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보건소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'마'급	1명	(35시간/주 근무)

※ 근무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, 필요시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 임용근거

- 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☐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 임용예정 분야별 주요 담당 업무

채용분야	채용직급	주요 직무내용	비고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'마'급	- 정신질환자 등록·사례관리 - 정신건강증진사업 - 자살예방사업 -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	

□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국 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단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
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
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
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
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
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
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□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채용분야	채용직급	자격 기준
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	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'마'급	▶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와 관련 자격(면허)증 1개를 소지하고,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 자격증 : 간호사, 사회복지사 1급, 임상심리사 2급, 작업치료사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,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「자살예방법」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

- ※ 응시자격 기준의 학과명과 응시자의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(첨부양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의 내용에 “우리 대학(원)의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”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- ※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. 다만,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. (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.(분야별 별도 기준 있을 수 있음에 유의)
- ※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5 보수 수준

채용분야	채용등급	근무시간	연봉예정액	비고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'마'급	주35시간	27,735천원	

- 최초계약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9급(상당) 상한액 52,829천원의 60%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적용
- 연봉 외 수당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전부가 정지됨.

6 시험 방법

□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임용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확인
- 합격자 발표 : 예천군 홈페이지(<https://www.ycg.kr>) ⇨ 열린군정 ⇨ 군정소식 ⇨ “예천군인사위원회 공고” 란에 공고
- ※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4항)

□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※ 5대 평정요소
 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
 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 ④ 예의·품행·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○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각 심사위원의 평정성적을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단, 합격권 내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※ 불합격 기준

제2차 시험(면접) 불합격 기준
○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"하"로 평정한 경우
○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 평정요소에 "하"로 평정한 경우

- 면접 응시자가 요청한 경우 면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
(국민권익위원회 권고(의안번호 제2023-255호))

□ 최종합격자 발표 : 추후 별도공고

- 예천군 홈페이지(<https://www.ycg.kr>) ⇨ 열린군정 ⇨ 군정소식 ⇨ “예천군 인사위원회 공고” 란에 공고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7

시험일정

구분	일정	비고
채용공고	2025. 7. 17.(목) ~ 7. 31.(금) / 15일간	
응시원서 접수	2025. 7. 29.(화) ~ 7. 31.(금) / 3일간	
제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	2025. 8. 8.(금) 예정	
제2차 시험(면접)	추후 별도공고	
제2차 시험(면접)합격자 발표		

8

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□ 원서교부 :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

□ 접수기간 : 2025. 7. 29.(화) ~ 7. 31.(목) / 3일간

※ 접수시간 : 접수기간 중 09:00 ~ 18:00까지

□ 접 수 처 : 예천군청 3층 총무과 행정팀

※ 우편접수 주소 :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
행정팀 ☎ 054-650-6083

□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
○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, 접수 후
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.

○ 우편접수 시 봉투 앞면에 '응시원서 재중' 기재

○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
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9

제출서류

□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
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
○ 응시수수료 : 마급(9급 상당) 5,000원의 예천군 수입증지 부착

※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.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
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□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
- ※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
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
□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- A4용지 2~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,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성격의 장·단점,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
□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
-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
-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(정책·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), 정책·사업 목표, 추진전략, 정책수단, 방법,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

□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 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□ 응시자격 중 세부요건의 자격증 사본 1부

※ 필수자격요건 자격증은 반드시 제출

□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
-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근무기간, 담당업무(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), 근무형태(근무시간)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※ 경력(재직증명서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'경력(재직)증명서' (별지 제9호서식) 추가제출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.
 -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개별적 사유로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※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※ 공무원 경력 증빙은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(징계현황 포함) 제출
 - ※ 원서 접수일 이후에는 기재출 경력사항이 아닌 새로운 경력사항에 관한 추가서류 제출 불가

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nhic.or.kr>)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- 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‘보험가입 전체기간’ 발급

□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
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
□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<별지 제8호 서식>

10 기타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**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**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,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.
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.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(재공고 시행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같음)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예천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팀 (☎054-650-6083)
 -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임용분야	담당부서	연락처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보건소	054-650-8031